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신정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공청회 개최, 공고·열람 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주민참여제도의 경우 그 형태가 사후적이고 형식적인데 그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, 행정문서 위주의 계획정보 제공으로 주민들이 도시계획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.
- 이에 도시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조례의 기본원칙에 주민참여 기회제공, 제도마련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적 규정을

신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오니
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
부탁드립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

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